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27 선고 2018나1284 판결 [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결 2018. 6. 26.

판결 선고 2018. 7. 27.

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가소5940618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2. 2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원고는 2015. 2. 10. 피고에게 주식회사 C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고 한다)이 발행한 보통주식 5,000주(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 한다)를 매매금액 25,000,000원으로 하여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(이하 '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'라고 한다)를 작성하였고,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을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

#### 가. 당사자의 주장

##### 1) 원고

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25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# 2) 피고

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매매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실질은 증여이며,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증여세 납부를 면하고자 과세관청에 신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.

#### 나. 판단

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(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),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,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(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).

을 제2호증의 기재,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고,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과 달리 과세관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, 원 ·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.

① 원고는 2015. 11. 2.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전부(50%)를 200,000,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,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실질이 매매라면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합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. 더구나 먼저 발생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,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2,500만 원의 변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5. 11월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% 대금에 상당한 2억 원을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.

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제2조에서 매매금액을 위 계약체결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, 제3조에서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,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.

③ 제1심 증인 D는 원고가 자금관리를, 피고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영업 관련하여 거래처에 잘못된 일이 있어 피고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으나, 세금 문제 때문에 매매 형식으로 주식을 이전하였고, 원고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데,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.

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이전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50:50의 비율로 소유하게 되었고,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 이를 때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청구한 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

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신현석, 판사 이정현, 판사 정성균